



보험연구원
Korea Insurance
Research Institute

보도자료

보도

2019. 4. 16(화) 15:00부터

배포

2019. 4. 16(화)

책임자

금융정책실
김해식 실장(3775-9041)

작성자

정원석 연구위원(3775-9037)

홍보담당

최원 수석연구원(3775-9057)

총 4매

「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」 공청회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 안철경)이 주최하는 『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』 공청회가 4월 16일(화)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됨
 - 이번 공청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보험상품의 사업비 체계와 모집수수료 지급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음
 -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『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』 발표를 통해 모집조직이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하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
-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“보험상품 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는 가격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상품이 단순한 미국, 호주의 보험시장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”라고 지적하면서,
 - “수수료 직접규제를 통해 유효경쟁(effective competition)* 부재에 대한 보완책이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장 경쟁과 규율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”고 강조하였음

* 독과점이나 정보비대칭 등으로 시장규율(market discipline)이 작동하지 않아 소비자는 시장에서 상품가치를 분별하기 어렵고 공급자는 상품의 가격과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력이 없는 경우 정부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함

□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보험이 그간 수행해 온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,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며,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되,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원칙하에 제도개선 방향이 논의·검토되어야 함을 당부함

〈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〉

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

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정보를 전달하도록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 제거

- 보장성보험 저축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계약공제액 조정이 필요함
 - 모집조직이 계약자의 필요보다는 모집수수료가 큰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음
 - 모집조직의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실질에 부합하는 표준계약공제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
- 저축보험료에는 저축성보험에 준하는 표준계약공제액을 적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 - 중도계약환급률이 지나치게 높은 장기보장성보험에 대한 표준계약공제액 조정도 검토가 필요함
 - 무사고 환급형 보험과 갱신형보험의 사업비 조정도 논의가 필요함

모집조직의 수수료 차익 추구로 인한 부작용 방지

- 표준계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상품의 경우 공시가 필요함
 - 보험회사 간 경쟁심화로 표준계약공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가하는 상품이 존재함
-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수준을 개선하고 모집조직 보수체계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
 - 모집조직이 1년 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(年)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수수료 분급 비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 -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% 이하,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% 이하

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□ 모집수수료 지급 및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
- 보험회사, 대리점 등이 모집조직에게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대한 기타 제도정비

□ 연금을 필요로 하는 계약자에게 모집수수료가 높은 종신보험 연금전환특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

- 종신보험 연금전환특약 판매 시 연금보험 연금액과 비교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□ 보장성 변액보험 환급률 안내 시 부대비용 누락으로 실질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하므로 이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

- 저축성 변액보험은 환급률 안내 시 실질 수익률을 안내하고 있음
- 보장성 변액보험에도 환급률 안내 시 실질 수익률 안내 의무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<http://www.kiri.or.kr>